



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웨이양 We Young 업무협약서(MOU)

한중 양 기관의 창업지원부문과 상호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기술교류 및 관련 업무협조를 위하여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웨이양인큐베이터스페이스는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장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분야)

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.

1.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개발 지원
2. 창업자 성장지원을 위한 플랫폼 형성
3. 산학협력과 관련한 교류 공동 추진
4. 양 기관 간 교류 활성화
5. 기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한 사업 수행

제3조 (상호 역할)

1. 창업활동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시제품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.
2. 양 기관은 각자 해당 국가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기 협력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.
3.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.
4. 기술교류, 합작투자 등 프로젝트를 성사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지속적 협력을 강화한다.
5. 기타 본 협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제4조 (신의성실의 의무)

양 기관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본 협약서 상의 조건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 (기타 사항)

1.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2.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보충 협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.

제6조 (계약의 효력)

1.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2. 본 계약을 국문과 중문으로 작성하며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
3. 본 협약서는 2부 작성되며, 협약체결 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8월 1일

웨이 양인큐베이터스페이스

CEO JENNI



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

단장 권순재

